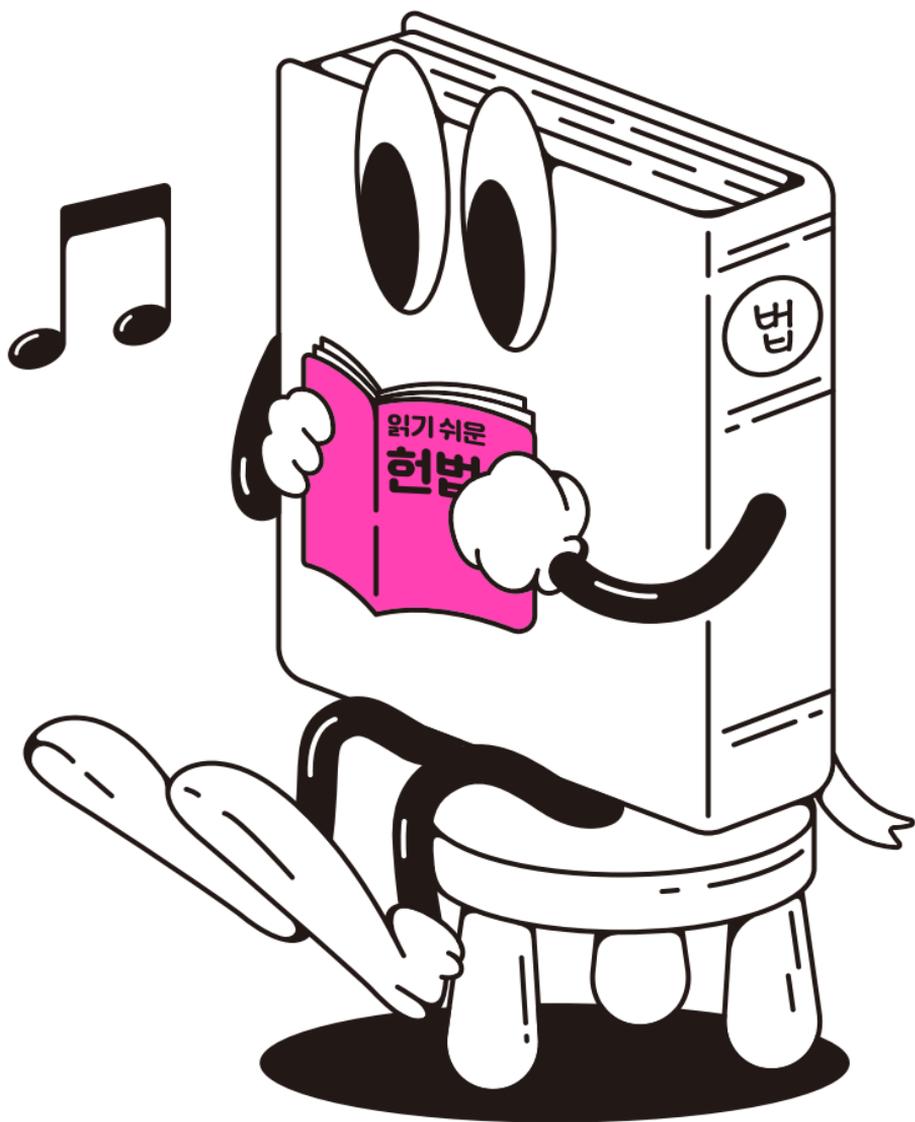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목차

| | | | |
|-----------------------|----|---------------------|----|
|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을 펴내며 | 4 | “한글 사랑” 노회찬 활동일지 | 68 |
| 《1987 헌법》 말 글 다듬기의 방향 | 6 | 단체 소개 | |
| 알기 쉽게 바꾼 《대한민국 헌법》 | |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 74 |
| 전문 | 8 | 언어는 인권이다, 한글문화연대 | 75 |
| 제1장 총강 | 10 | 평등하고 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 | 76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2 | (부록) 헌법개정에 부쳐 | 78 |
| 제3장 국회 | 26 | | |
| 제4장 정부 | 38 | | |
| 제1절 대통령 | 38 | | |
| 제2절 행정부 | 44 | | |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4 | | |
| 제2관 국무회의 | 46 | | |
| 제3관 행정각부 | 50 | | |
| 제4관 감사원 | 50 | | |
| 제5장 법원 | 52 | | |
| 제6장 헌법재판소 | 56 | | |
| 제7장 선거관리 | 58 | | |
| 제8장 지방자치 | 60 | | |
| 제9장 경제 | 60 | | |
| 제10장 헌법개정 | 64 | | |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발간에 부쳐

‘춘철살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노회찬 의원은, 사실 누구보다 우리말과 한글 사랑이 특별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 보람(배지)의 한글화를 이끌었고, 국회 휘장을 한글로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재단 추모관에 남겨진 그의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반영한 국어사전인 문세영 선생의 ‘우리말 사전(1950년대 판본)’입니다.

‘법’은 ‘도덕을 글로 정리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조차, 오랜 한자문화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일본어 글투 때문에 그 체계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작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 특히 헌법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 책이 더욱 읽기 쉽고 친구처럼 가까이 있어야 할 까닭입니다.

작년 2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읽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남기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정리한 개헌안에서 단 한 가지, 바로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안을 토대로 반영해야겠다.” 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글문화연대와 노회찬재단이 이런 뜻을 담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읽기 쉽고 우리말답게 다듬은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을 573돌 한글날에 펴냅니다. 이 개정안은 ‘읽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국어학자 리의도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이가 머리를 맞대고 이룬 성과이자, 노회찬 의원의 바람이 담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10.9

언어는 인권이다 한글문화연대·공정하고 평등한 나라 노회찬재단

「1987 헌법」 말·글 다듬기의 방향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헌법은 나라의 최고 법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온 국민이 알기 쉽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들의 공용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말과 글은 되도록이면 한국어답게 부러 써야 하며, 한국어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터하여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헌법 조문을 다듬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다듬은 대상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인 1987 헌법 130개 조·항 모두이며, 다듬기의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듬은 결과는 그 전체를 현행 조문과 대조할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뒤에 붙입니다.

중요 참고 문헌

한상범 허웅, 1978.07.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뜻이다, 뿌리깊은나무 제29호, 98~116쪽,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한상범, 1997.09. 헌법 이야기, 현암사.

정상우, 2007.10. 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리의도, 2018.02. 헌법의 낱말과 문장을 이렇게 다듬자, 개헌 정책 토론회 자료집(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13~51쪽.

1. 알기 쉽게 ⇒ ‘쉬움성(용이성)’
2. 친근하게 ⇒ ‘친근성’
3. 우리말 규범에 맞게 ⇒ ‘맞춤법/규범성’
4. 우리말 문법에 맞게 ⇒ ‘문법성’
5. 명확하게 ⇒ ‘명확성’
6. 간결하게 ⇒ ‘간결성’
7. 사회 변화와 상황에 맞게 ⇒ ‘상황성’
8. 띄어쓰기법에 맞게 ⇒ ‘띄기법(띄어쓰기법)’

바야흐로 활발해진 헌법 개정의 논의 공간에 이 자료를 내놓으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과 표기에서도 더 알기 쉽고 더 한국어다운, 알찬 헌법이 되기를 빌고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장 총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린 섬들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부속된 도서들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

제5조

-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 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 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

- ①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 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제8조

-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 ②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를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드높이는 데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개인이 지닌, 침해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영전에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이나 압수 수색이나 심문을 당하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이나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③ 체포 구속이나 압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 ⑦ 다음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2.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3조

- ① 국민은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 안에서 범죄가 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 ② 누구도 소급하여 제정한 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③ 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제16조

국민은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국민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주자나 관련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국민은 누구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국민은 누구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②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 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린다.
-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 ①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 ③ 공공의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이나 제한,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보상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을 맡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 피고인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⑥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②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나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다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자기가 보살피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 ⑥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노동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성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⑤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한다.
- ⑥ 국가 유공자 상이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할 기회를 준다.

제33조

- ①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국가는 신체 장애인 및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국가는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 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경시하지 않는다.
-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도 병역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1조

-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이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 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6조

-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 공공단체나 기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 이익이나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도록 알선할 수도 없다.

제47조

-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열며,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8조

국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이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제49조

국회 회의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폐기된다.

제52조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 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내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국회에서 의결하여 보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⑤ 제1항의 기간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보내진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 ② 예산안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③ 국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와 운영
 2. 법률이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 ① 국회는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1.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 2.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 3. 우호 통상항해 조약
 -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5. 평화 조약
 -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 7.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 ②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61조

- ① 국회는 국정 일반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증인에게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의 절차,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식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 건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4조

- ① 국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 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탄핵 결정은 당사자를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그것으로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③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제67조

-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당선자를 확정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③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는 되어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 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임기 끝나기 전 70일부터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다짐을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나라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 ①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문화를 드높이는 데에 힘쓰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하거나 파견하며,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 조약을 맺는다.

제74조

-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다.

제76조

- 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내린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명령에 따라 개정 폐지된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77조

①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덧붙여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직이나 사사로운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법에 따른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③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8. 영전수여
- 9. 사면 감형과 복권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제87조

-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 2. 전쟁 선포와 평화 조약, 이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 4.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을 처분하는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이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긴급재정경제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 7.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8. 영전 수여
- 9. 사면 감형과 복권
-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획정
- 11. 정부 내부의 권한의 위임이나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2.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한 평가 분석

- 14. 정당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14. 정당 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 합동참모 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7. 이밖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 ①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 ①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맡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내릴 수 있다.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해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 ②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②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5조

-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 ① 법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하고 심판 결과에 따라 재판한다.
- ② 명령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사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③ 재판하기 전의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의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 심판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112조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제110조

-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비상계엄이 내려진 동안의 군사재판은 다음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 1. 군인 군무원의 범죄
 - 2. 군사에 관한 간첩죄
 - 3.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 심판
 -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사항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제112조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 ① 헌법재판소에서 다음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 법률 위헌의 결정
 2. 탄핵의 결정
 3. 정당 해산의 결정
 4.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의 결정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 ①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 관리 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제115조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같은 선거 사무나 국민투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6조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관리하되,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있다.

제120조

-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 ① 광물을 비롯하여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채취나 개발이나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며, 그것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
- ② 농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인정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활동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를 효율성 있고 균형 있게 이용 개발하며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지을 수 있다.

제123조

- ①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④ 국가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4조

국가는 소비 행위의 건전성과 상품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되,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없으며,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
- ②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헌법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0조

-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30조

-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 ②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 ③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한글사랑” 노회찬 활동일지

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5년 6월 21일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활동

2005년 12월 8일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률안 개정이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국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같은 법에 의한 국경일로 승격 규정함으로써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이란 조문을 넣음으로써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킨 것임.

2006년 1월 19일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전택부), ‘한글을 빛낸 큰별’로 노회찬 선정

- 감사패 내용: “한글을 빛낸 큰 별’들께 겨레의 보배이자,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을 빛내고 후대에 물려주고자 온갖 정성을 다해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힘썼기에 이 보람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2일

한자로 된 ‘국회의원 선서문’ 한글화 요청 공개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

- “개원 첫날의 첫 서명을 하는 문서가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문서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무거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입니다.”

- 2012년 7월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004년 5월 30일(17대 국회 등원 첫날)

“배지가 한문으로 돼 있어서 바꿔 달라고 했어요. 한자가 바깥에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의혹할 때 ‘혹’(或)자로 되어 있어요. 의혹이 많은 집단이잖아요. 저희들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걸 한글로 ‘국’자로 바꿔줄 때까지 저는 안 달 겁니다.”

-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배지가 한자 ‘國(국)자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았던 노회찬은 2004년 6월 30일 한글문화연대와 한글사랑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한글로 ‘국회’라고 쓴 배지 100개를 전달받아, 등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배지를 단다.

2004년 6월 30일

한글문화연대 한글배지 만들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

2004년 7월 1일

국회의원에게 한글배지 배부하며 한글국회 운동 전개

2004년 7월 15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책임감과 사명 의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선서가 모든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한글로 쓰여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2012년 7월 11일

‘국회의원 선서문’ 전면 한글화 시행. 헌정 사상 첫 한글로 된 선서문 정의당 서기호 의원 낭독

2012년 7월 11일

(노회찬의원 트위터 글): “국회의원 선서문이 이제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선서를) 못 지켰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다.”

2012년 7월 19일

‘국회깃발과 국회배지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민의를 전당이라는 국회는 여전히 나라 ‘국’자인지 ‘혹’자인지 모를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국’자를 우리 이자스민 의원이 읽고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한문을 잘 이해하는 국민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만 이해하는 국민도 대변하고자 함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알기 어려운 한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국회의원 중 20명이 공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한문으로만 표기하도록 신청한 것을 비판하며) “대만에 계시는 분, 중국 본토에 계시는 분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어기본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2012년 7월 30일

한글 관련단체 주요 대표자와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진행. 국회기 등 전면적인 한글화 추진 청원서 전달

2012년 8월 3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표 발의

2012년 9월 23일

한글날 공휴일로 재지정

2012년 10월 5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공동대표 이대로), 우리말을 가꾸고 빛내는 데 힘써 온 ‘우리말 으뜸 사랑꾼’으로 노회찬 선정

- 선정 이유: “이 분은 평소에도 우리 말글을 남달리 사랑하고 잘 못쓰는 것을 걱정하는 정치인입니다. 17대 국회 때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데도 앞장을 서고, 일본 말투로 된 법률 문장을 쉬운 우리 말글로 바꾸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국회의원 선서가 한자혼용으로 된 것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한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협조해서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휘장과 깃발, 보람(배지)에 쓰인 國(국)자를 한글로 쓰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나 사법부인 법원보다 우리 말글을 업신여긴다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래 으뜸 지킴이로 뽑았습니다.”

- 2012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 제10회 전국문해한마당축제 ‘늦깎이 청춘들’의 글쓰기 대회 및 시화전 개최(국회의원 동산)

2012년 11월 7일

(노회찬의원 트위터 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기념으로 한글 넥타이 매고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글일 공휴일 지정을 반대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2014년 5월 2일

국회기, 국회배지 등 한글화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4년 10월 9일

한글학회, '한글나라 큰별'로 노회찬 선정

- 선정 이유: “의원님께서서는 평소 우리 말글문화 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셨고 우리글이 잘 못 쓰여지는 것을 걱정하는 정치인이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 배지와 휘장을 한글로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해 앞장서 오셨다.”

2015년 10월 9일

(노회찬의원 트위터 글):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 명패도 한글로 써야 한다. 집권당 당대표를 위시해서 한자표기를 고집하는 분들은 선거구를 중국으로 옮기든가 명패를 한글로 바꾸든가 선택을 해야 한다. 국경일 한글날 아침에 권한다.”

2016년 5월 31일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국회청원>

제20대 국회 1호 청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 해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박현수 한글과 컴퓨터 이사 공동 참석)

- “12만 명의 국민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제 1996년 이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우리 문화를堂堂히 대표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고자 하는 민의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청원을 소개한다.”

2017년 9월 2일

(노회찬의원 트위터 글): “우리나라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성인이 264만명이라 합니다. 이분들 중 용기를 내어 뒤늦게나마 한글을 깨친 분들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 할아버지 한 분이 쓴 시를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9년 10월 9일

한글문화연대, '2019 우리말 사랑꾼'으로 노회찬 선정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1987년에 개정된 우리 헌법을 더욱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다듬어 민주주의 발전과 국어 문화 발전을 꾀하고자 2018년 1월 14일에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흥사단 등 41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헌법 조문을 다듬어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2018년 2월 7일에 노회찬, 원혜영, 강길부 의원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 정책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을 개최하였고, 나아가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국회 정개특위와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는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 흥사단 류종열 이사장, 외솔회 성낙수 회장,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이대로 회장, 한국어린이문학회협의회 이주영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차재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입니다.

한글문화연대는 국민운동본부의 사무국을 맡아 일하였습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한글문화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303호
전화: 02-780-5084 / 전송: 02-6082-8855
누리집: www.urimal.org 편지: urimal@urimal.org
페이스북: facebook.com/urimal2000
팟캐스트: podbbang.com/ch/7823
후원: 하나은행 294-910009-56304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언론의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싸웠습니다.
- 서울 지하철 안내방송 ‘스크린도어’를 ‘안전문’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알기 쉽게 바꿨습니다.
-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을 막아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한글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냈습니다.
-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 공공기관과 언론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라고 요청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학술 활동

- 우리말과 한글에 관한 ‘한글문화 토론회’를 엽니다.
- 시민 강좌인 ‘알음알음 강좌’를 엽니다.
-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이라는 내용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문화 활동

- ‘한글웃이 날개’ 댄시자랑(패션쇼)을 열어 한글의 아름다움과 멋을 널리 알렸습니다.
- ‘바른 말 고운 말 쉬운 말 만화/표어 공모전’으로 청소년에게 우리말과 한글을 아끼는 마음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 해마다 ‘우리말 사랑꾼, 우리말 해침꾼’을 뽑아 언론에 발표합니다.
- 6월 15일 세종 나신 날과 한글날에 ‘시민 꽃 바치기’ 문화행사를 열어 한글과 세종대왕을 기리고 있습니다.
-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녹음 방송(팟캐스트) ‘우리말 아리아리’를 만들어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글 사랑 활동 지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생 연합 모임 ‘우리말가꿈이’, 전국 중고등학생 동아리 모임 ‘우리말 사랑동아리’,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의 우리말 사랑 활동을 돕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1501호
전화: 02-713-0831 / 전송: 02-713-0830
누리집: <http://heroh.org>
편지: omychans@naver.com
페이스북: facebook.com/omychans

재단 후원안내
농협은행 301-0243-3091-41
국민은행 463501-01-281299
예금주
(재)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

노회찬재단은 제17, 19, 20대 국회의원이자 자유인, 평화인, 문화인이었던 고 노회찬의원의 꿈과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창립선언을 했습니다. 제2, 제3의 노회찬을 양성하고 지원하며 “노동존중사회”와 “선진복지국가”를 꿈꾸었던 노회찬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재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노회찬 정치’ 기록물 및 유품 보존·활용

- 의정활동자료 및 각종 연설문·원고·사진 영상 보존
- 유품 정리·보관 및 출간, 연구자료로 활용
- 전시 및 추모 기념행사 주최

‘노회찬 정치학교’ 운영

- 노회찬 의원의 정치철학을 계승할 정치인 양성·지원
-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을 위한 인문학습의 장 제공
- 청소년 참여 정치·문화 프로그램 운영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비전만들기 사업

- 연구활동 및 포럼, 토론회 개최
-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사회공론화 활동 전개

노회찬상 제정 및 시상

-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노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인권 확대, 경제민주화·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노회찬 인권과 평등상」, 「노회찬 정의상」 시상

노회찬 의원은 ‘한글’을 사랑한 국회의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니다.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 오랜 숙고의 시간을 가져온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침내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져, 위원장으로서 개헌시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르렀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정의당의 개헌시안 발표와 함께 이뤄진 기자회견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던 노회찬 의원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하며

-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 -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개헌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의당은 당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안의 내용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는 그 소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채 자동 해산되어 지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라는 이름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마저도 논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며, 개헌의 내용은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모든 원내정당들이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담아 오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헌 시안은 향후 정의당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의당 개헌안으로 공식화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의당 개헌 시안’의 특징은,

첫째,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의 분산을 추진하되 분산된 권력이 국민과 지방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지방정부

권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력기관의 권한 조정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본권과 경제 사회권의 강화 방향은 제헌헌법 이래 독재권력의 개헌 과정에서 약화되고 후퇴한 내용을 원상회복 하고, 민주주의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기본권을 과감하게 수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치권과 권력기관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당 개헌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 분야’, ‘경제 재정 분야’, ‘지방분권 분야’, ‘정당 선거 분야’, ‘사법부 분야’ 등 5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실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역할, 정당정치 민주화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제도, 사법독립을 위한 장치 등이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입니다.

현행 헌법에 명기돼 있는 4.19민주이념에 더해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면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정의 실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으로 추가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적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총강에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하여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였고,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연속성을 위해 그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여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도 확대했습니다.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역시 금지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공적 영역 및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보장도 적시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를 신설하였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노동과 관련하여 적정임금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시했으며,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명기했습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로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신설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포함돼 있었던 조항을 처음으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국민의 새로운 권리로서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하고, 환경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생명권 조항에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포함했으며,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망명권과 사상의 자유권, 저항권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에서 보듯이 헌법적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권력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항권을 명시하여 국가기관의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이번 정의당 개헌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거권의 경우 ‘최소주거기준 이상에서 주거생활을 보장’함을 명시하였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적절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권’을 신설했습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권을 신설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하여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위치 지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재정분야입니다.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던 제119조 2항을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불공정과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경제질서가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임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의 한도에서 보장됨을 명기했습니다. 자연자원과 국토가 국민의 공유자산임을 명시했으며,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호혜성과 공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대통령 소속이었던 것을 독립기구화하고,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 호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과 수행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따를 것을 명시했으며, 입법권 역시 국회와 지방의회로 권한을 분산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선거분야입니다.

정당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공천과정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을 헌법에 적시하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양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인구의 증가 및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의 숫자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구성과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국회구성에 반영되도록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고, 공직 선거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했으며, 대표적으로 후진적 조항인 ‘대통령 자격의 만 40세 이상 조항’을 폐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분야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성격을 기존 ‘최고법원’에서 ‘최고심법원’으로 변경하여, 대법원이 각급 법원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대법관의 수 역시 자문위 안과 동일하게 24인으로 확대했으며, 대법원장의 추천을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근거조항을 헌법에 적시했으며, 전시 외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으며, 예비재판관 제도를 둘 것을 제안하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에서 법관 자격을 폐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입니다.

금번 정의당 개헌안에는 정부형태 변경을 따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의 기본권 및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며, 정부형태 변화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입니다. 특히 국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정부형태 변화도 무의미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28일

노회찬 (정의당 개헌특위 위원장)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1판 1쇄 2019년 10월 9일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기획 및 제작 한글문화연대, 노회찬재단
디자인 일상의실천
인쇄 퍼스트경일

한글문화연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303호
02-780-5084
urimal@urimal.org
<http://www.urimal.org>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1501호
02-713-0831
omychans@naver.com
<http://hcroh.org>

본 도서는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한글문화연대와 노회찬재단에 있습니다.

